OECD –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 재검토

■ OECD는 2021년 1월 21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국제 조세조약 지침(Guidance on Impact of COVID-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)을 업데이트함[1)]

○ 2020년 4월 3일에 발표된 지침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상황들을 추가하였으며, 코로나19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논의된 지침이 계속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함

○ 고정사업장 창설, 기업 및 개인의 거주지 변경, 고용소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

■ 공중보건 조치로 인한 재택근무는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사건이므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창설이나 기존의 고정사업장 폐지가 불가능함을 명시함

○ 공중보건 조치에 따른 재택근무는 고용주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예외적인 사건으로 재택근무의 영속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홈오피스를 고정사업장으로 만들 수 없음

○ 대리인(agent)이 공중보건 조치에 따라 재택근무 중에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 활동을 체결한다고 하여 새로운 고정사업장을 창설할 수 없음

–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이전에도 대리인이 관행적/반복적으로 기업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해온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을 창설할 수도 있음

○ 코로나19 유행의 특수한 상황으로 건설 현장의 작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여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음

■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상황이 법인 및 개인의 거주지를 변경할 수 없음을 명

1) IBFD, COVID-19 Pandemic: OECD Revisits Guidance on Impact of COVID-19 Crisis on International Tax Treaty Rules, https://research.ibfd.org/#/doc?url=/data/tns/docs/html/tns_2021-01-22_o2_1.html, 검색일자: 2021. 2. 16; EY, OECD Secretariat issues updated guidance on tax treaties and the impact of COVID-19 pandemic, https://www.ey.com/en_gl/tax-alerts/oecd-secretariat-issues-updated-guidance-on-tax-treaties-and-the, 검색일자: 2021. 2. 18.

시하고 있음

○ 특히, 업데이트된 지침은 공중보건 조치에 따라 이동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중거주자의 경우 영구주택을 가질 가능성이 없는 한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지 판정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

■ **업데이트된 지침은 고용소득과 관련한 예외적인 문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음**

○ 공중보건 조치로 인하여 이동이 금지된 직원은 OECD 모델의 제15조 2항에 따른 거주일수 산정 시 해당 관할권에서 추가로 소요된 일수를 무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[2)]

○ 종업원이 다른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고용주를 위하여 원격으로 근무하는 경우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새로운 과세 권리가 다른 관할권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과세 권리는 기존 과세 권리를 대체할 수 있음

<자료 수집 및 정리: 변정윤 연구원>

2) OECD, ARTICLES OF THE MODEL CONVENTION WITH RESPECT TO TAXES ON CAPITAL, https://www.oecd.org/ctp/treaties/articles-model-tax-convention-2017.pdf, 검색일자: 2021. 3. 2.